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ERISA법)에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 가입을 의무화함. 미가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사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수급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탁자배상책임 강화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Plan Officials)¹⁾의 적립금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법 412조)에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함

- Wildwood Industries 社 회계담당자의 절도사건, Pacesetter Corp. of America 社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사건 등 퇴직연금 수탁인의 범죄행위가 발생함²⁾
- 미국은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³⁾를 통해 퇴직연금 관계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규정함

- 1) 퇴직연금 관계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 현금, 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 ② 제3자에게 연금자산 이전 권한을 보유한 자, ③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 퇴직연금 재산에 관한 거래 협상권을 보유한 자, ④ 직접 자금집행 권한 보유자, ⑤ 어음, 수표 등에 대한 서명 권한 보유자, ⑥ 보증이 필요한 행위에 대한 감독 또는 의사결정 책임 보유자 등이 있음(U.S. Department of Labor(2008))
- 2)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2010), *Contributory Plans Criminal Project*; 퇴직연금 관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소송사례는 "Gallagher(2008), ERISA Bonding Requirements and the Fidelity Insurer, *Fidelity Law Association Journal*" 등을 참조
- 3)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Department of the Treasury's Listing of Approved Sureties*

-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의무화 배경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적립금 사기 및 유용사건 발생 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임

- 미국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험형태, 가입대상, 담보위험, 보장금액 등으로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표 1〉 참조)

〈표 1〉 미국 신원보증보험 내용 및 특징(요약)

구분	내용	특징
보험형태	개별보증보험, 기명집합보증보험 등 4가지 형태	재무부 승인 받은 보험회사 취급 (보증보험, 재보험사 등)
가입형태 및 대상	의무가입(미이행 시 벌칙규정 존재) 퇴직연금 관계자(Plan Official)	1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범위 포괄적
담보위험	범죄행위(사기 및 부정직)에 의한 기금 손실	절도, 횡령, 위조, 유용 등
보장금액	연금자산 10%	50만 달러 ~ 100만 달러

- (보험형태) 피보험자 설정방식에 따라 개별보증, 기명집합보증(Name Scheduled Bond), 직위집합보증(Position Schedule Bond), 포괄보증으로 이루어짐

- 개별보증(Individual Bond)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 1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집합보증(Scheduled Bond)은 보험증권상에 피보험자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재(2인 이상)하는 방식임
- 반면 포괄보증(Blanket Bond)은 특정인에 국한하지 않고 수탁인 전체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방식임

- (가입대상) 퇴직연금 적립금 및 기타재산을 취급하는 모든 자(퇴직연금관계자)가 가입대상이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에 비해 포괄적임

- 신원보증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관계자(Plan Officials)는 퇴직연금 기금 및 기타재산을 관리하거나 재량권을 보유한 모든 자를 의미함
 - 다만, 증권거래법 제1조에 의거하여 증권중개인(Broker or Dealer)으로 등록된 자,⁴⁾ 특정 요건⁵⁾을 충족하는 수탁인의 경우 신원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4) 단, 해당 증권중개인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구에서 정한 신원보증요건(fidelity bond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 함

5)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①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업행위를 하는 법인, ②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신탁지명권을 행사하거나 보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자, ③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감독 또는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 ④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 한편, 퇴직급여 지급재원이 조합, 고용주, 연금관리자, 임원, 근로자의 일반자산(general asset)인 경우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면제시키고 있음

- (담보위험) 퇴직연금 기금 및 기타 재산⁶⁾을 취급하는 퇴직연금 관계자의 사기 또는 부정직 등 범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피해를 담보함

- 범죄행위로써 절도, 강도, 횡령, 위조, 부당전환(Wrongful Conversion), 고의적 유용(Willful Misapplication) 등이 포함됨
- 이 점에서 수탁자책임의무 위반 및 제도관리상 과실 등에 따른 법적 책임(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수탁자책임배상보험과 차이가 존재함

- (보장금액) 퇴직연금 관계자가 관리하는 연금자산의 10% 금액에 대하여 최소 1,000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 한도로 설정함

- 직전년도에 관리한 퇴직연금자산 규모를 연초에 평가하여 해당 자산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임
 - 다만 예술작품, 수집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비적격 자산(non-qualifying assets)에 투자한 경우, 보증채권금액은 비적격 자산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함⁷⁾

〈표 2〉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별 보험료

구분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천 달러)								
		265 미만	265 ~ 275	275 ~ 300	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500 ~ 750	750 ~ 1,000
보험료 (달러)	연간	100	101	105	113	120	127	135	170	206
	3년형	270	273	284	305	324	343	365	459	556

주: 5인 미만의 기금관리인을 보유한 제도 기준임 (뉴욕주의 경우 상기 보험료 수준을 상회)
 자료: HARTFORD, ERISA FIDELITY BOND COVERAGE FOR YOUR EMPLOYEE BENEFIT PLAN

- 2006년 이전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최대금액이 50만 달러로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으로 일부제도의 경우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됨⁸⁾
 - 2008년 1월부터 자사주(Employer Securities)가 포함된 퇴직연금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최대금액이 100만 달러로 증액됨⁹⁾

- 이처럼 미국은 수탁자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6) “퇴직연금 기금 또는 기타 재산(funds or other property)”이란 퇴직연금 제도운영 및 급부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함

7) DWC - The 401(k) Experts(2018), Fidelity Bonds FAQs

8) Pickle(2015), *ERISA's Bond Requirement - An Overview*. PLAN CONSULTANT

9)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Pub. L. No.109-280, 120 Stat.780

- 미국은 수탁자배상책임보험(〈표 3〉 참조), 신원보증보험 등 보험제도를 퇴직연금에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와 수탁자(퇴직연금관계자) 간 이익상충에 따른 손실 문제를 해소함
-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권 보호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미국과 같은 제도 장치가 부재함

〈표 3〉 퇴직연금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내용 및 특징(요약)

구분	내용	특징
가입형태	임의가입	사업자 대부분 가입
가입대상	퇴직연금 수탁자(Fiduciaries)	퇴직연금사업자 등
담보위험	수탁자책임의무 위반 및 제도관리상 과실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손해배상, 소송비용
취급기관	일반 보험회사	AIG, Hanover 등
보장금액	보험계약금액 상이	300만 달러~500만 달러

- 최근 정부정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전적 보완차원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 퇴직연금에 비해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퇴직연금관계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함
 - 이에 따라 수탁자배상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책임위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또한 미국처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kiri